

통일 · 단순화명령 해제

산업표준화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
통일 · 단순화 명령품목중 다음품목에 대하여 명령을 해제합니다.

2011년 5월 27일

기술표준원장

○ 명령 해제품목 및 적용규격

완제품	품목명	적용규격
화물자동차 (적재용량 5 Ton)	트럭 적재함의 안쪽치수	KS R 0102

부 칙

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